U250626-3012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박호균 소유물건 (2025타경50756)
의 뢰 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호
감정평가서번호	통일(강원)U250626-301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통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최 우 진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88, 4층 404호 (석사동)
TEL.033-911-8444 FAX.033-910-8444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최 우 진 최우진 (인)

㈜통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최우진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액	일천일백이만일천팔백원정(₩11,021,800.-)				
의 뢰 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호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 출 처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박호균 (2025타경50756)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17.	2025.07.17.	2025.07.1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원)
토지	407 × 2/19	토지	42.84	48,000	2,056,320
토지	1,607 × 2/19	토지	169.16	53,000	8,965,480
		< 이 하 여 백 >			
합 계					₩11,021,8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이 시 규 이시규 (인)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공 부	 사 정	감 정 평 가 액 단가(원/㎡)	 금액(원)	비 고
1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보전관리지역	$407 \times \frac{2}{19}$	42.84	48,000	2,056,320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매각지분	박호균	지분	19분의 2					
2	"	415	답	보전관리지역	$1,607 \times \frac{2}{19}$	169.16	53,000	8,965,480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매각지분	박호균	지분	19분의 2					
	합 계							**₩11,021,800**	.-
				-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기간은 2025년 07월 17일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 일자인 2025년 07월 17일입니다.

(주)통일감정평가법인
TONG IL APPRAISAL CO., LTD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적산법' 등이 있습니다.

-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교방식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임대료)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익방식에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을 산출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기호(1,2)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대상인 박호균 지분 19분의 2 전부에 대한 평가이나, 지분별 위치 및 경계 확인이 불가능한 바, 본건 평가에서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 본건 기호(1,2) 토지 중 일부는 "도로 및 소하천 등"으로서, 이용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평가대상 토지

기호	소재지 (강원 특별자치도)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지역	형상 지세	도로 접면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407중 42.84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보전관리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	38,200
2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1,607 중 169.16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보전관리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	35,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토지 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2) 비교표준지 선정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 2025. 01. 01.)

구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형상 지세	도로접면	공시지가 (원/㎡)
A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21	전	1,207	전	보전관리	부정형 완경사	맹지	22,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 군 ·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소재지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비 고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전관리	2025.01.01. ~ 2025.07.17.	0.557 (1.00557)	2025.01.01~2025.05.31 : 0.408 2025.05.01~2025.05.31 : 0.098 (1+0.00408)*(1+0.00098*47/31) ≒ 1.00557

※ 2025년 06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전/답지대

조 건	개 별 요 인 항 목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관개, 재해 및 자연환경 등	일조, 풍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등
		관개, 배수의 양부 등
		수해, 기타 재해의 위험성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및 경작의 편부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 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규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15	1.00	1.15	1.00	0.85	1.124
2	B	1.15	1.00	1.15	1.00	0.93	1.230
결 정 의 견							

► 본건 기호(1)은 비교표준지(A)와 개별요인 비교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경사 및 경작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며, 기타조건(도로 및 소하천저촉 등)에서 열세합니다.

► 본건 기호(2)는 비교표준지(B)와 개별요인 비교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경사 및 경작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며, 기타조건(도로 및 소하천저촉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36538,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누16300, 1998.07.10 선고 98두6067,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2) 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비교표준지의 가격}}{\text{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 가격}}$$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분석

■ 평가사례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 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지세	도로 접면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감정평가 목적
#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전	1,962중 654	보전관리 (휴경지 및 일부 도로)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	49,000	2024.05.17.	경매
#2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전	5,101중 2,603.5	보전관리 (휴경지 등)	부정형 완경사	맹지	42,000	2023.09.13.	경매
#3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전	3,732	보전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세로(불)	36,000	2023.07.14.	공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번을 *로 표기하였습니다.

■ 거래사례 (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구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지세	도로 접면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답	1,609	보전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세로(불)	50,849	2025.07.01.
		► 총 거래금액 : 81,816,000원 (토지만의 거래)						
2)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전	1,002	보전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맹지	49,900	2022.07.06.
		► 총 거래금액 : 50,000,000원 (토지만의 거래)						
3)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답	2,652	보전관리 (답)	부정형 평지	세로(불)	52,790	2020.11.20.
		► 총 거래금액 : 140,000,000원 (토지만의 거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번을 *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적용사례 선정

적용사례	비교표준지 A	사례 #2
적용사례 선정의견	상기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사례 #2와의 비교)

구 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가격 (원/㎡)	격 차 율
사례 기준	42,000	1.01958	1.00	1.000	42,822	1.860
표준지 가격	22,900	1.00557	-	-	23,027	

시점수정 : 1.01958 (2023.09.13. ~ 2025.07.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전관리지역)

지역요인 : 사례와 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 아래의 개별요인 비교표 참조

구 분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표준지/사례	1.00	1.00	1.00	1.00	1.00	1.000
결 정 의 견						

► 표준지(A)는 평가사례(#2)와 개별요인 비교시 유사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인근지역 내 대상 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고려하고, 인근지역 내 최근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본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용도지역	지 목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보전관리	전	1.86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토지 단가 산정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2,900	1.00557	1.00	1.124	1.86	48,142	48,000
2	22,900	1.00557	1.00	1.230	1.86	52,682	53,0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48,000	407중 42.84	2,056,320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2	53,000	1,607중 169.16	8,965,480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합계)			11,021,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

가. 산출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지세	도로 접면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답	1,609	보전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세로(불)	50,849	2025.07.01.
		► 총 거래금액 : 81,816,000원 (토지만의 거래)						
2)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전	1,002	보전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맹지	49,900	2022.07.06.
		► 총 거래금액 : 50,000,000원 (토지만의 거래)						
3)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	답	2,652	보전관리 (답)	부정형 평지	세로(불)	52,790	2020.11.20.
		► 총 거래금액 : 140,000,000원 (토지만의 거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번을 *로 표기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의 선정

적용사례	기호 1	사례 1)
적용사례 선정의견	인근의 거래사례 중 대상 토지와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시점수정, 사정보정이 가능한 사례 가운데 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 사례를 본건 토지의 비준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사정보정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된 인근 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1.00)

라.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교 사례	기 간	용도 지역	변동률 (%)	비 고
1)	2025.07.01. ~ 2025.07.17.	보전 관리	0.054 (1.00054)	2025.05.01~2025.05.31 : 0.098 (1+0.00098*17/31) ≒ 1.00054

※ 2025년 06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거래사례는 모두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지역요인이 동일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기 호	비교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1)	1.10	1.00	1.05	1.00	0.85	0.982
2		1.10	1.00	1.05	1.00	0.93	1.074
결 정 의 견							
► 본건 기호(1)은 거래사례1)과 개별요인 비교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경사 등)에서 우세하며, 기타조건(도로 및 소하천저촉 등)에서 열세합니다. ► 본건 기호(2)는 거래사례1)과 개별요인 비교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경사 등)에서 우세하며, 기타조건(도로 및 소하천저촉 등)에서 열세합니다.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1) 토지 단가 산정

구 분	거래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50,849	1.00	1.00054	1.00	0.982	49,960	50,000
2	50,849	1.00	1.00054	1.00	1.074	54,641	55,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50,000	407중 42.84	2,142,000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2	55,000	1,607중 169.16	9,303,8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합계)			11,445,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 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결정의견

구 분	시 산 가 액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11,021,800	-
거래사례비교법	11,445,800	-

본 평가에 있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본 시산가격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충분성이 다소 부족하고, 거래당사자간 정보수집력의 차이 및 상호간의 협상력의 차이, 거래의 필요성의 차이 등에 따른 거래가격의 진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변동성의 범위안에 있다고 판단되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하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토지 가액의 결정

구 분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48,000	407중 42.84	2,056,320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2	53,000	1,607중 169.16	8,965,480	
토지 가액(합계)			11,021,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경기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면 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2,014중 212	11,021,800	-
감정평가액(합계)		11,021,800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도시계획관리 및 공법상제한상태	8. 임대관계
3. 형태 및 이용상황	6. 제시목록외의 물건	9. 기타 참고사항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 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 본건 토지 중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입니다.

5. 도시계획관리 및 공법상제한상태

기호(1, 2)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외의 물건

없습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도시계획관리 및 공법상제한상태	8. 임대관계
3. 형태 및 이용상황	6. 제시목록외의 물건	9. 기타 참고사항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2) : 본건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입니다.

8. 임대관계

임대미상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영리 413 외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외

범.례						
	본 건	표 준 지	매매사례	담 보	경 매	
	일반거래	보 상	자산재평가	공 매	취득처분	

지 적 개 황 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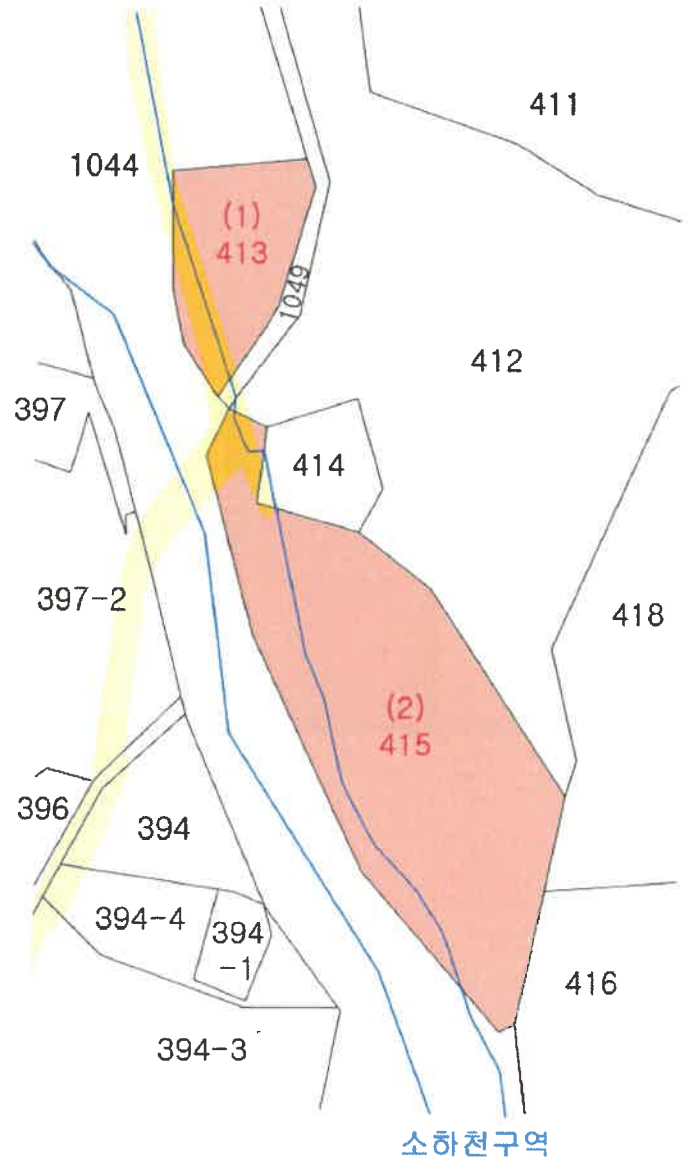

범 례

감정평가대상토지 | 용도지역구분선 | 감정평가건물3층이상

도 로 | 감정평가건물 1층 | 감정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 감정평가건물 2층 | 제시외건물

(주)통일감정평가법인
TONG IL APPRAISAL CO., LTD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사 진 용 지

【 본건 전경(기호1) 】

【 본건 전경(기호1 / 도로 및 하천 부분) 】

사 진 용 지

【 본건 전경(기호2) 】

【 본건 전경(기호2 도로 부분) 】

사 진 용 지

【 본건 전경(기호2 / 하천 부분) 】

U250626-3012

㈜통일감정평가법인

우 24378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88, 4층 404호 (석사동) / www.tongilap.com
TEL.033-911-8444 / FAX.033-910-8444 / e-Mail : tonggw@kapaland.co.kr

문서번호: U250626-3012

시행일자: 2025. 07. 17.

수 신: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호

참 조: -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우리 ㈜통일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6.24.자 귀 제 『2025타경50756』 호로 의뢰하신 『박호균 소유(2025타경50756)』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 구 서 1부 끝.

(주)통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장
지사장 최 우 진 (인)

U250626-3012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통일강원U250626-3012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호 귀하

일금 사십사만육천육백원정 (₩446,600.-)

2025. 06. 24자 귀 제 『2025타경50756』 호로 의뢰하신 『박호균 소유 (2025타경50756)』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 가 수 수 료	290,000	◐ 평 가 수 수 료 ◑
(나) 실 비	여 비	106,800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건 × @1,000,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2건 × @1,000 ---------- = 4,000 원 ▶기타실비 사진 6장 × @1,000 = 6,000 원
	물 건 조 사 비	-	
	공 부 발 급 비	4,000	
	기 타 실 비	6,000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116,800	
합 계(가 + 나, 천원미만 절사)		₩406,000	
부 가 가 치 세		₩40,600	
총 계		₩446,6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446,600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U250626-301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 좌 번 호 ★

◈ 농협은행 301-0148-6738-11 (주)통일감정평가법인

2025년 07월 17일

㈜통일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88, 4층 404호 (석사동)
TEL. 033-911-8444 FAX. 033-910-8444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221-85-17691

(주)통일감정평가법인
TONG IL APPRAISAL CO., LTD

문서확인번호: 1750-8979-4419-8445

시점확인 진본 정부시점확인센터

정부24

발급번호 : 202551110008703278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6/ 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407.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관리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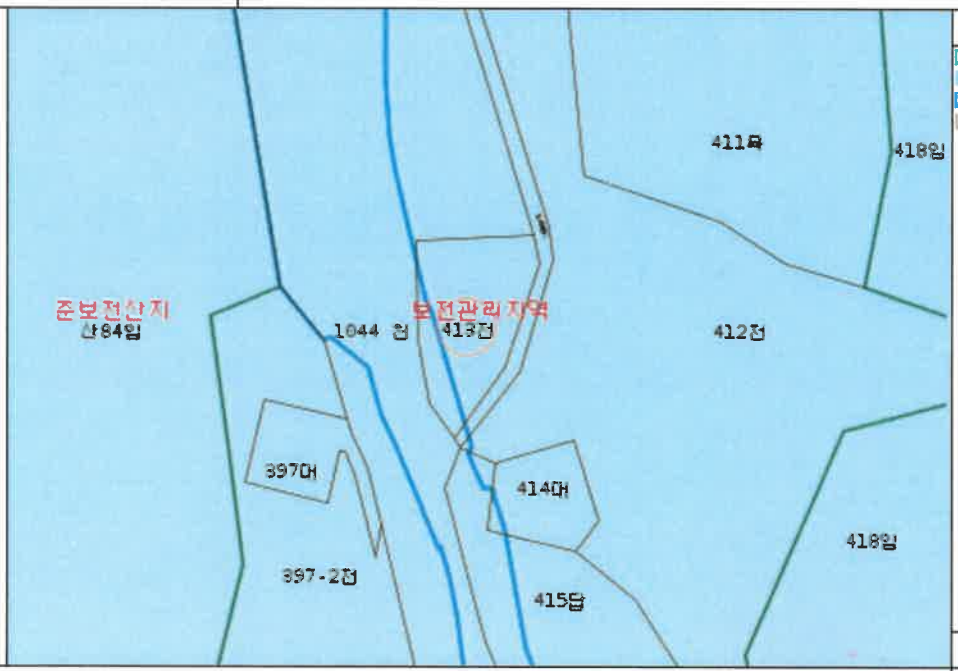

범례
- 준보전산지
- 보전관리지역
- 소하천구역
- 법정동

축척 1/11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06/ 2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춘 천 시

춘천시장인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1750-8979-4419-8445

발급번호 : 202551110008703278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5/ 06/ 26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 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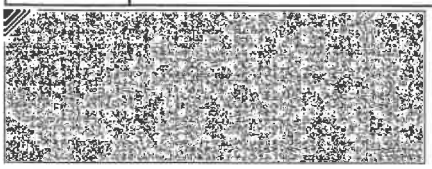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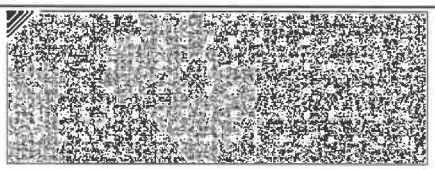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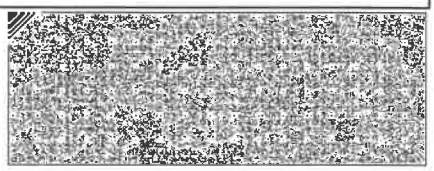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1750-8981-5059-5235

시점확인 진본 정부시점확인센터

정부24

발급번호 : 202551110008703294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6/ 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1,607.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관리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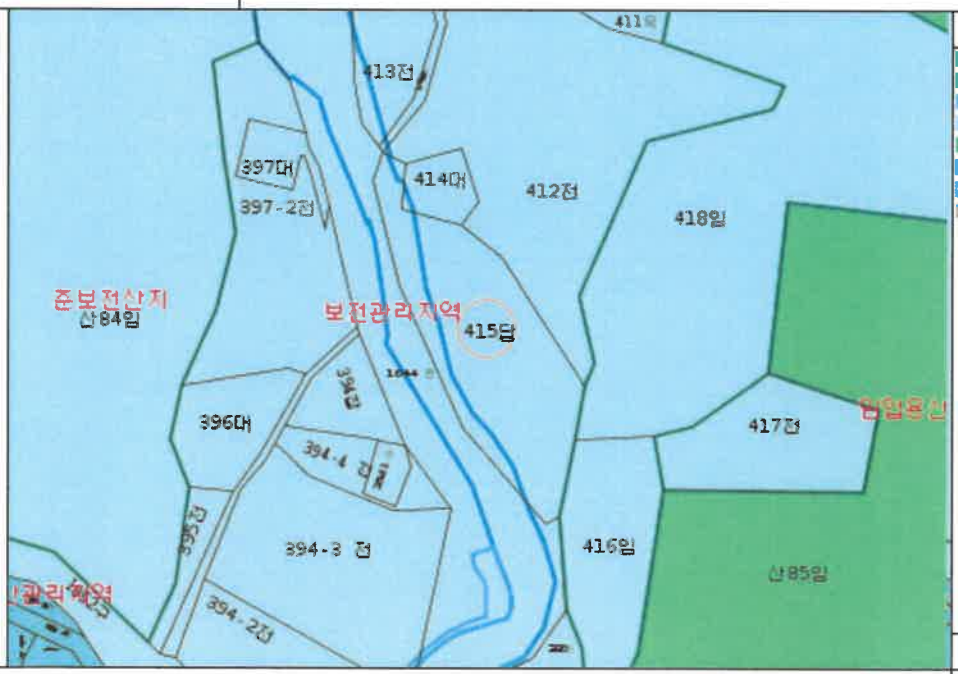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06/ 2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춘 천 시

춘천시장인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 202551110008703294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5/ 06/ 26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 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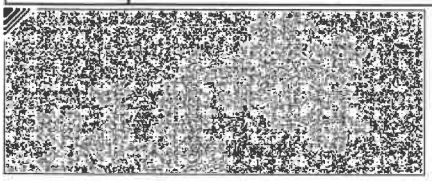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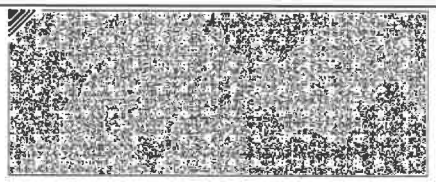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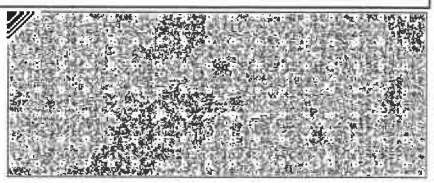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필
진본
2025/06/26
09:26:02
KST
정부시점확인센터

문서확인번호 : 1750-8975-6178-6486

정부24
gov.kr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5511100087032 65	처리시각	09시 26분 00초	발 급 자	정부24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 번	413번지	축 척	등록:1/1200 출력: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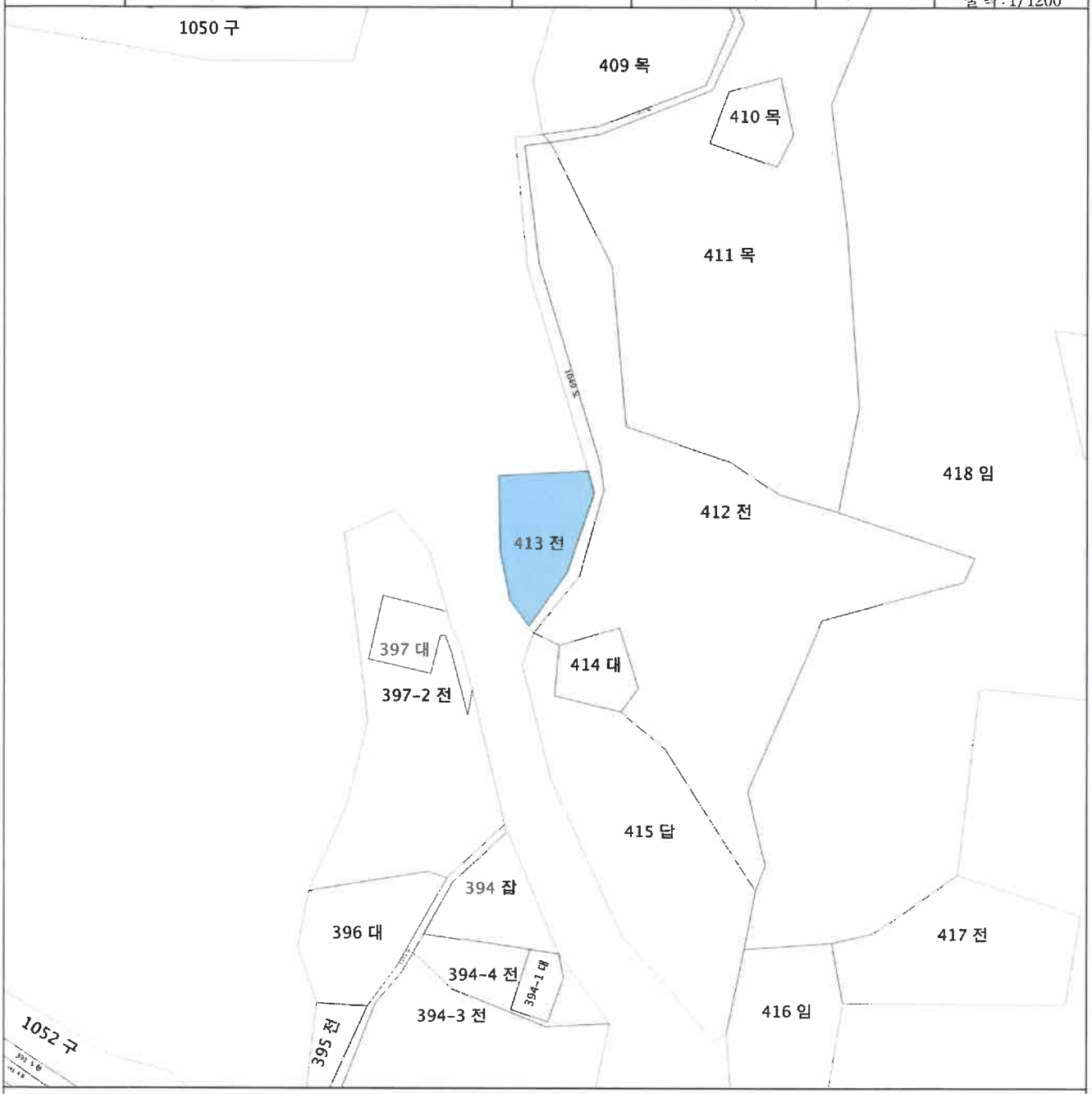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06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춘 천 시 장 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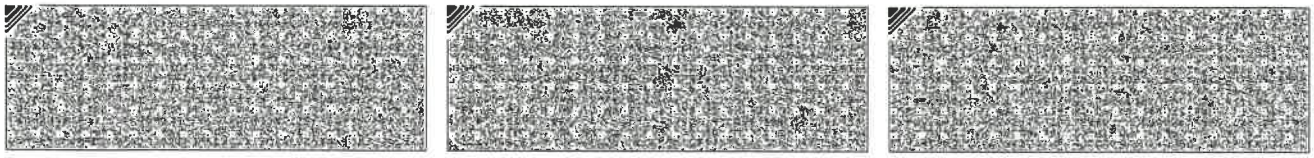

시점확인본 진본 2025/06/26 09:42:27 KST 정부시점확인센터

문서확인번호 : 1750-8985-4753-5692

정부24 gov.kr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551110008703304	처리시각	09시 42분 25초	발 급 자	정부24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 번	415번지	축 척	도록:1/1200 출력: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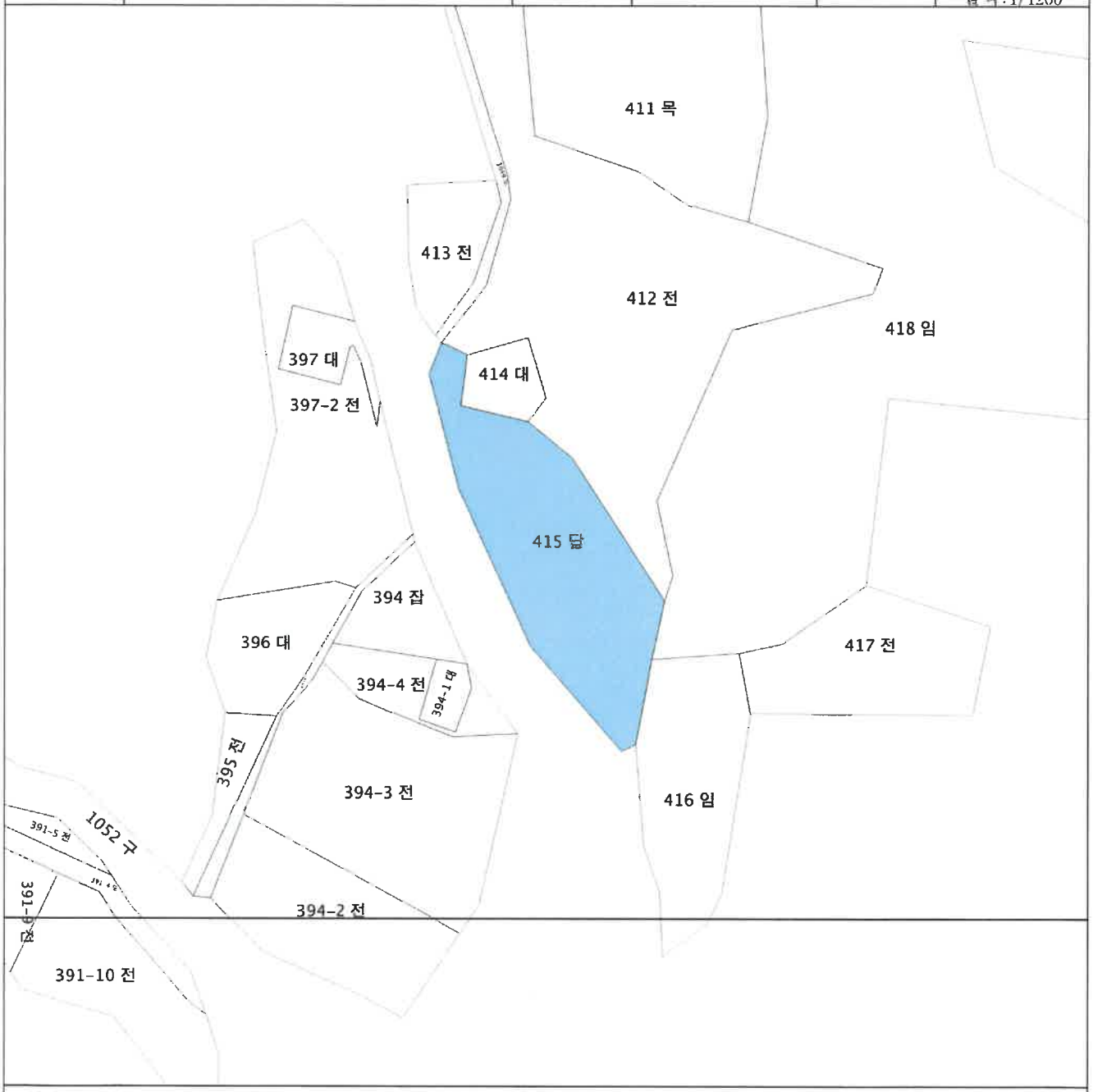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06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춘 천 시 장 춘천시장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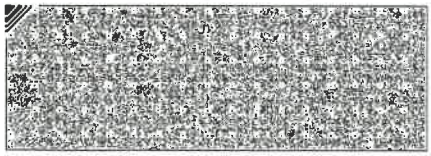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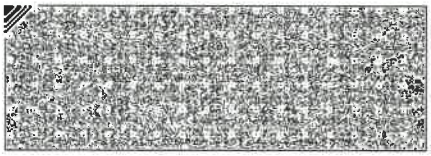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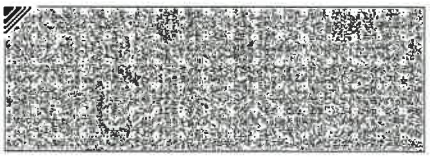

시점확인본 진본 2025/06/26 09:25:34 KST 정부시점확인센터

문서확인번호 : 1750-8975-3408-7639

정부24 gov.kr

토지 대장

고유번호	5111032022-10413-0000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 번	413	축 척	1:1200

도면번호	34	발급번호	202551110-00870-3262
장 번 호	1-1	처리시각	09시 24분 48초
비 고		발 급 자	인터넷민원

토지표시			소유자		
지 목	면 적(㎡)	사 유	변동일자 / 변동원인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01) 전	*407*	(47) 1958년 02월 01일 지적복구	2025년 02월 28일 (05)성명(명칭)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 이찬호 외 6인	700519-1******
(01) 전	*407*	(50) 1992년 02월 01일 춘성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 이하 여백 ---	
(01) 전	*407*	(51) 1995년 01월 01일 춘천군 동산면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01) 전	*407*	(50) 2023년 06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등급수정 년월일	1981년 01월 01일 수정	1984년 07월 01일 수정	1990년 01월 01일 수정	1993년 01월 01일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36	75	90	91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27,800	31,000	33,900	36,800	35,400	36,400	38,2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5년 6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춘천시장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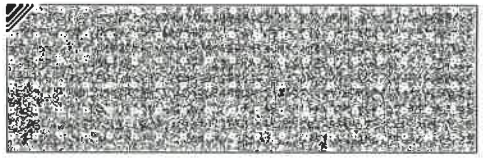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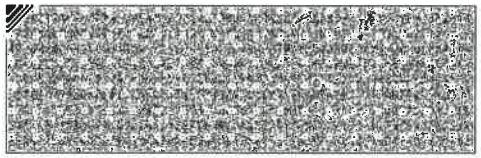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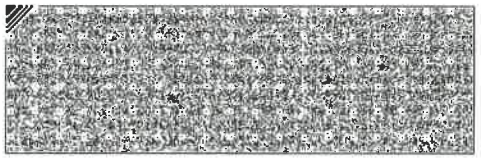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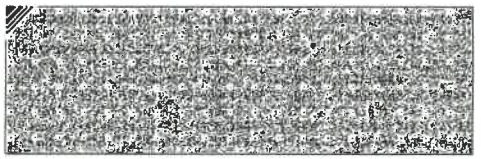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5111032022-10413-0000			장 번 호	1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번	413	비 고	

순번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소유권 지분	소유자 주 소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3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560613-2****** 박정임
000004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591015-1****** 박호집
000005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광명시 광명동 7-31	630423-1****** 박호균
000006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660105-2****** 박정애
000007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681210-1****** 박호상
000009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470630-2****** 박정희
000013	2025년 02월 28일 (05)성명(명칭)변경	7/1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700519-1****** 이찬호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본 진본 2025/06/26 09:30:08 KST 정부시점확인센터

문서확인번호 : 1750-8978-0807-7533

정부24 gov.kr

토지 대장

고유번호	5111032022-10415-0000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 번	415	축 척	1:1200

도면번호	34	발급번호	202551110-00870-3271
장 번 호	1-1	처리시각	09시 28분 45초
비 고		발 급 자	인터넷민원

토지표시			소유자		
지 목	면 적(㎡)	사 유	변동일자 / 변동원인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번 호
(02) 답	*1,607*	(47) 1958년 02월 01일 지적복구	2025년 02월 28일 (05)성명(명칭)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이찬호 외 6인	700519-1******
(02) 답	*1,607*	(50) 1992년 02월 01일 춘성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 이하 여백 ---	
(02) 답	*1,607*	(51) 1995년 01월 01일 춘천군 동산면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02) 답	*1,607*	(50) 2023년 06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등급수정 년월일	1979년 10월 15일 수정	1983년 07월 01일 수정	1984년 07월 01일 수정	1990년 01월 01일 수정	1991년 01월 01일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22)	43	96	105	106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2025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26,100	29,100	31,900	34,600	33,300	34,200	35,9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5년 6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춘천시장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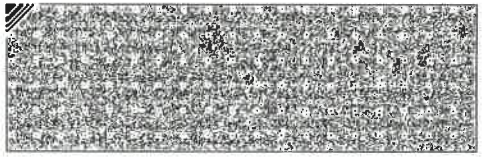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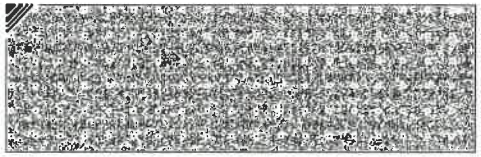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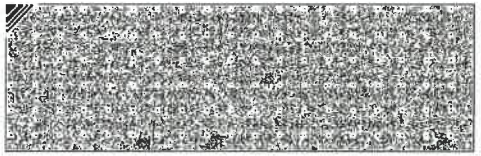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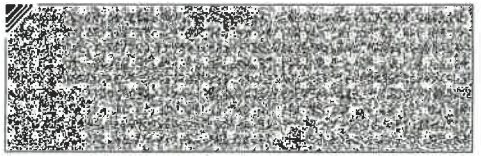

문서확인번호 : 1750-8978-0807-7533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5111032022-10415-0000			장 번 호	1
토지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지번	415	비 고	

순번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소유권 지분	소유자 주 소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3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560613-2****** 박정임
000004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591015-1****** 박호집
000005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광명시 광명동 7-31	630423-1****** 박호균
000006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660105-2****** 박정애
000007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681210-1****** 박호상
000009	2005년 11월 09일 (03)소유권이전	2/19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470630-2****** 박정희
000013	2025년 02월 28일 (05)성명(명칭)변경	7/1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700519-1****** 이찬호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1401-1996-301052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65년6월16일~~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 봉명리 413~~	~~전~~	~~123평~~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0월 27일 전산이기
~~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123평~~	~~1995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1999년11월22일 등기~~
~~3~~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407㎡~~	~~면적단위환산 2005년11월9일 등기~~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407㎡	2023년6월1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6월12일 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보존	1965년6월16일 제7667호		소유자 박성춘 춘성군 동산면 봉명리 469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0월 27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05년11월9일 제51333호	1993년12월30일 상속	공유자 지분 19분의 3 길옥순 251001-*******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40202CKH011950600109632600000010927000152160011l2 **발급확인번호 AAOF-AQFK-0529** **발행일 2025/06/26**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보라매나산스위트 -2102 지분 19분의 2 박호권 521020-******* 시흥시 정왕동 1422-11 -103 지분 19분의 2 박정임 5606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지분 19분의 2 박호집 591015-*******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지분 19분의 2 박호균 630423-******* 광명시 광명동 7-31 지분 19분의 2 박정애 6601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지분 19분의 2 박호상 6812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지분 19분의 2 박정옥 410810-******* 춘천시 퇴계동 983 퇴계(2)주공아파트 210-1002 지분 19분의 2 박정희 470630-*******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3	2번길옥순지분전부, 2번박호권지분전부, 2번박정옥지분전부 이전	2005년11월9일 제51334호	2005년11월3일 매매	공유자 지분 19분의 7 김병유 671228-*******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49
3-1	3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09년6월26일 제31494호	2007년4월20일 개명	김병유의 성명(명칭) 김도형
4	3번김도형지분전부 이전	2009년6월26일 제31495호	2009년6월23일 매매	공유자 지분 19분의 7 이수형 700519-*******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매매목록 제2009-610호
4-1	4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25년2월28일 제699954호	2014년2월27일 개명	이수형의 성명(명칭) 이찬호
5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4년4월17일 제18259호	2014년4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카단50780)	청구금액 금86,784,529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 (구로디지털지점)
6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5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14년9월17일 제44577호~~	~~2014년9월17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4타경965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 (구로디지털지점)~~
7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4년11월6일 제55918호	2014년11월6일 춘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카단1255)	청구금액 금3,944,008 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114671-0026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강서지점)
8	6번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15년12월29일 제71150호	2015년12월15일 취소기각결정	
9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8년4월5일 제14541호	2018년4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8카단34433)	청구금액 금20,343,209 원 채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여신관리부)
10	2번박호균지분압류	2019년6월4일 제22412호	2019년6월3일 압류(개인납세1과-티53902)	권리자 국 처분청 강서세무서장
10-1	공매공고	2023년11월9일 제37868호	2023년11월8일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2023-11809-003)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1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5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20년3월10일 제15875호	2020년3월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0타경51234)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서울서부영업본부서부신용보험2센터)
12	2번박호균지분압류	2020년3월18일 제17589호	2020년3월18일 압류(징수과-3134)	권리자 춘천시 3211
13	11번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20년8월11일 제39086호	2020년8월3일 부동산강제경매기각	
14	12번압류등기말소	2023년5월15일 제14886호	2023년5월15일 해제	
15	2번박호균지분압류	2024년4월22일 제14011호	2024년4월22일 압류(징세과-티23821)	권리자 국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16	15번압류등기말소	2024년6월27일 제22522호	2024년6월26일 해제	
17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19일 제3101103호	2025년6월1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5타경50756)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서부채권관리단)
17-1	17번강제경매경정			목적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5번가압류의본압류의이행)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2025년6월23일 등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 매 매 목 록 】

목록번호	2009-610			
거래가액	금31,256,035원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예 비 란	
			등기원인	경정원인
1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02	7	2009년6월23일 매매	
2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03	5	2009년6월23일 매매	
3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2	7	2009년6월23일 매매	
4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4	2009년6월23일 매매	
5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4	2009년6월23일 매매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6월 26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40202CKH011950600109632600000010927000552160001112 **발급확인번호 AAOF-AQFK-0529** **발행일 2025/06/26**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 의 사 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401-1996-301052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전 407㎡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박정애 (공유자)	660105-*******	19분의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2
박정임 (공유자)	560613-*******	19분의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2
박정희 (공유자)	470630-*******	19분의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2
박호균 (공유자)	630423-*******	19분의 2	광명시 광명동 7-31	2
박호상 (공유자)	681210-*******	19분의 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2
박호집 (공유자)	591015-*******	19분의 2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2
이찬호 (공유자)	700519-*******	19분의 7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4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5	가압류	2014년4월17일 제18259호	청구금액 금86,784,529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박호균
7	가압류	2014년11월6일 제55918호	청구금액 금3,944,008 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박호균
9	가압류	2018년4월5일 제14541호	청구금액 금20,343,209 원 채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	박호균
10	압류	2019년6월4일 제22412호	권리자 국	박호균
10-1	공매공고	2023년11월9일 제37868호		박호균
17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19일 제3101103호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확인불가
17-1	강제경매경정		목적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5번가압류의 본압류의이행)	확인불가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 기록사항 없음

출력일시 : 2025년 6월 26일 오전 9시27분16초

[참 고 사 항]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1401-1996-301054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65년6월16일~~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 봉명리 415~~	~~답~~	~~486평~~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0월 27일 전산이기
~~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486평~~	~~1995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1999년11월22일 등기~~
~~3~~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1607㎡~~	~~면적단위환산 2005년11월9일 등기~~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1607㎡	2023년6월1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6월12일 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보존	1965년6월16일 제7667호		소유자 박성춘 춘성군 동산면 봉명리 469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0월 27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05년11월9일 제51333호	1993년12월30일 상속	공유자 지분 19분의 3 길옥순 251001-*******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40202SDS011950610010963260000001092600015457001112 **발급확인번호 AAOF-AQEP-0548** **발행일 2025/06/26**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보라매나산스위트 -2102 지분 19분의 2 박호권 521020-******* 시흥시 정왕동 1422-11 -103 지분 19분의 2 박정임 5606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지분 19분의 2 박호집 591015-*******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지분 19분의 2 박호균 630423-******* 광명시 광명동 7-31 지분 19분의 2 박정애 6601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지분 19분의 2 박호상 6812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지분 19분의 2 박정옥 410810-******* 춘천시 퇴계동 983 퇴계(2)주공아파트 210-1002 지분 19분의 2 박정희 470630-*******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3	2번길옥순지분전부, 2번박호권지분전부, 2번박정옥지분전부 이전	2005년11월9일 제51334호	2005년11월3일 매매	공유자 지분 19분의 7 김병유 671228-*******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49
3-1	3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09년6월26일 제31494호	2007년4월20일 개명	김병유의 성명(명칭) 김도형
4	3번김도형지분전부 이전	2009년6월26일 제31495호	2009년6월23일 매매	공유자 지분 19분의 7 이수형 700519-*******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매매목록 제2009-610호
4-1	4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25년2월28일 제699954호	2014년2월27일 개명	이수형의 성명(명칭) 이찬호
~~5~~	~~2번박호균지분압류~~	~~2014년4월10일 제17204호~~	~~2014년4월10일 압류(소득세과-1386)~~	~~권리자 국 처분청 구로세무서~~
6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4년4월17일 제18259호	2014년4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카단50780)	청구금액 금86,784,529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 (구로디지털지점)
~~7~~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6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14년9월17일 제44577호~~	~~2014년9월17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4타경965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 (구로디지털지점)~~
8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4년11월6일 제55918호	2014년11월6일 춘천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카단1255)	청구금액 금3,944,008 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114671-0026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강서지점)
9	7번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15년12월29일 제71150호	2015년12월15일 취소기각결정	
~~10~~	~~2번박호균지분압류~~	~~2017년7월28일 제33508호~~	~~2017년7월10일 압류(징수과(세외)14677)~~	~~권리자 서울특별시강서구~~
11	2번박호균지분가압류	2018년4월5일 제14541호	2018년4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8카단34433)	청구금액 금20,343,209 원 채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여신관리부)
12	2번박호균지분압류	2019년6월4일 제22412호	2019년6월3일 압류(개인납세1	권리자 국 처분청 강서세무서장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과-티53902)	
12-1	공매공고	2023년11월9일 제37868호	2023년11월8일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2023-11809-003)	
~~13~~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6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20년3월10일 제15875호~~	~~2020년3월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0타경51234)~~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서울서부영업본부서부신용보험2센터)~~
~~14~~	~~2번박호균지분압류~~	~~2020년3월18일 제17589호~~	~~2020년3월18일 압류(징수과-3134)~~	~~권리자 춘천시 3211~~
15	13번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20년8월11일 제39086호	2020년8월3일 부동산강제경매기각	
16	14번압류등기말소	2023년5월15일 제14886호	2023년5월15일 해제	
17	5번압류등기말소	2024년7월4일 제23525호	2024년6월27일 해제	
18	10번압류등기말소	2024년12월16일 제44354호	2024년12월16일 해제	
19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19일 제3101103호	2025년6월1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5타경50756)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서부채권관리단)
19-1	19번강제경매경정			목적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6번가압류의본압류로의이행)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2025년6월23일 등기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매 매 목 록 】

목록번호	2009-610			
거래가액	금31,256,035원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예 비 란	
			등기원인	경정원인
1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02	7	2009년6월23일 매매	
2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03	5	2009년6월23일 매매	
3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2	7	2009년6월23일 매매	
4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4	2009년6월23일 매매	
5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4	2009년6월23일 매매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6월 26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40202SDS011950601010963260000001092600055457001112 **발급확인번호 AAOF-AQEP-0548** **발행일 2025/06/26**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 의 사 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401-1996-301054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답 1607㎡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박정애 (공유자)	660105-*******	19분의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125-1402	2
박정임 (공유자)	560613-*******	19분의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04	2
박정희 (공유자)	470630-*******	19분의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스윗닷홈 104-1102	2
박호균 (공유자)	630423-*******	19분의 2	광명시 광명동 7-31	2
박호상 (공유자)	681210-*******	19분의 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5 신대방아파트 101-601	2
박호집 (공유자)	591015-*******	19분의 2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5-1304	2
이찬호 (공유자)	700519-*******	19분의 7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350	4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6	가압류	2014년4월17일 제18259호	청구금액 금86,784,529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박호균
8	가압류	2014년11월6일 제55918호	청구금액 금3,944,008 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박호균
11	가압류	2018년4월5일 제14541호	청구금액 금20,343,209 원 채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	박호균
12	압류	2019년6월4일 제22412호	권리자 국	박호균
12-1	공매공고	2023년11월9일 제37868호		박호균
19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19일 제3101103호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확인불가
19-1	강제경매경정		목적 2번박호균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6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이행)	확인불가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 기록사항 없음

출력일시 : 2025년 6월 26일 오전 9시26분57초

[참 고 사 항]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